

<p>一般廢棄物 收集·運搬業의 許可, 許可取消, 營業停止命令 등에 관한 事務 外에 2件의 業務를 新規로 區廳長에게 委任을 하고, 都市計劃事業 實施計劃의 認可 등 外 2件의 都市計劃 關聯事務를 追加로 區廳長에게 委任하는 內容입니다.</p> <p>우리 委員會에서는 清掃代行業體 許可 및 許可取消 등의 權限을 區廳長에게 委任하는 것은 清掃體系 確立과 代行業體에 대한 效果的인 指導監督을 기할 수 있고, 都市計劃 關聯事務의 委任은 區單位 都市基本計劃을 樹立하는 등 區廳長의 都市計劃 關聯機能을 대 폭 強化시켜 주는 것으로 地方自治의 活性化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同 改正條例案을 出席委員 全員 一致로 原案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議決해 주실 것을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.</p> <p>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님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	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4항중 “시정연구관·투자관리관”을 “정책 기획관·재정기획관”으로 하고, 동조제6항중 “관계 전문가”를 “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또는 관계전문가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6월 30일”을 “8월 31일”로, 동조제2항중 “7월 31일”을 “9월 30일”로, 동조제3항중 “8월 31일”을 “10월 31일”로 한다.</p> <p>제6조제3항중 “5월 20일”을 “7월 31일”로 한다.</p> <p>제7조제2항중 “10월 31일”을 “사업연도 개시 35일전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[별표]의 보사환경국란에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
<p>93.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허가 및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</p> <p>나. 청문 및 허가취소·영업정지·시정지시·경고 등의 행정처분</p> <p>다. 휴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</p> <p>라. 보고 및 자료의 청구와 검사 등</p>	<p>○폐기물관리법 제17조</p> <p>○동법 제19조, 제56조, 제57조</p> <p>○동법 제42조</p> <p>○도법 제43조</p>	<p>구 청 장</p>